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담당 : 최재혁 참여연대 선임간사 tsc@pspd.org, 02-723-5302)
제 목 컨트롤타워는 무엇을 했나 <1차 기관보고,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2.12.27. (총 5 쪽)

보 도 자 료

<1차 기관보고,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컨트롤타워는 참사 당일, 무엇을 했나

대통령실·행안부 등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제 역할 하지 못해
경찰, 부실한 계획·부적절한 대응의 경위 명명백백 밝혀져야

일시/장소 : 12. 27.(화) 오전 9시 20분 / 국회 소통관

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12/27(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이 소개하고 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기관보고를 통해 밝혀져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2. 기관보고의 대상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체계 상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전반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시 빠른 초동조치를 통해 재난수습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참사 당일,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바 없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의 부실함과 함께, 참사 당일, 위험의 징후를 감지하여 재난을 대비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였어야 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부재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가 재난의 예방과 대비, 참사 당일의 초동 조치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이들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3. 또한,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부실한 대응계획, 작동하지 않은 보고체계, 상황의 축소·은폐,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태도 등 경찰에게 제기되는 다수의 의혹 등이 빠짐없이 해소되어야 한다.
4.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국정조사 모니터링팀은 지난 주 진행된 현장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피감기관 관련자들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문점이 이후 기관보고, 청문회 등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 불성실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참사 이후,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위험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들이 참사 당일,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보고받고, 보고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상황실과 당직실 등의 근무일지의 원문 등 참사 당일 근무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5. 진상규명위원회는 대검찰청, 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기관보고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컨트론클, 참사 당일 무엇 했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성역없는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22.12.27.(화) 오전 9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_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 소개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 참석·발언자
 - 사회 : 서채완 변호사 / 유가족 대리인
 - 소개발언 :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모두발언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자(이종철 대표, 이정민 부대표)
 - 발언 1 :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 현장조사 등 국조에 대한 평가
 - 발언 2 : 최종연 변호사 / 행안부 관련 진상규명 과제
 - 발언 3 : 이창민 변호사 / 경찰 관련 진상규명 과제
- ▣ 붙임 : 1차 기관보고 관련 진상규명 과제
- ▣ 참고: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제>

1차 기관보고 관련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과제

2022.12.27.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1. 대통령실 등

-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현재 재난관리시스템 상 컨트롤타워라고 알려져 있음. 비상시 컨트롤타워임과 동시에, 평상시 재난관리 관련 매뉴얼의 운영·관리의 역할을 수행함.
- 국회 운영위원회의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편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의 업무분장으로 “치안·안전·재난 관련 정책 점검 및 동향 파악”이 명시되어 있음(187쪽). 또한 국가안보실의 경우, 2차장실의 업무로 “국가위기관련 상황관리 및 초기대응”이 명시되어 있고(195쪽)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업무로는 “국가위기관련 상황관리 및 초기 대응”와 함께, “사회·재난안전 관련 국가위기 초기상황 관리”가 명시되어 있음(196쪽).
- 올해 행정안전부는 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관련하여 국정상황실은 위기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재난안전 주무비서관실’이라는 표현을 ‘국정상황실/소관비서관실’로 변경하는 등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기도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이 재난, 안전과 관련한 국가행정 등의 근거가 되는만큼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 있음. 대통령실에 대한 상황의 보고·전파 등 재난관리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역할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공개되고 있지 않음. 국정조사 과정에서 재난과 관련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2.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재난안전법 제6조). 이와 같은 직무 상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함.
-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10월 중 개최가 예정된 지역축제의 현황을 파악함. 이와 같은 행정은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2022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함. 한편, <2022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태원의 '헬러원데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이와 같은 행정에서 인파의 분산, 이동하는 군중의 동선에 대한 관리 등은 점검내용에서 확인하기 어려움.
-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38쪽\)](#)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13개 중앙부처, 5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365일 24시간 상황근무함. 국가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는 조직임. 평상시 각종 재난상황 모니터링,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 정보의 보고·전파, 초동 조치 등의 임무 수행 의 역할을 수행함.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관련 기관들이 재난 대응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의 무선 통신망](#)”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는 관련하여 “서울운영센터”가 설치·운영 중임. 10.29이태원참사 당일, 재난안전통신망의 작동 여부는 확인되어야 함.
-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관련하여, (1)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역할이 밝혀져야 함. 예를 들어,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어느 기관으로부터 무엇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위험의 정도, 대응단계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참사 당일 보고받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참사 당일, 각종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역할이 적정했는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규정 상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등이 확인되어야 함.
- 또한, (2) 참사 당일, 행정안전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볼 필요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이 언제 참사를 인지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00:45 현장 도착 후 01:30까지 현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시·지휘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부서의 대응 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함. (3)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1차 지시사항이 10월 30일 00시 16분에 전파된 경위, 참사 당일, NDMS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활용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져야 함.
- 유가족의 권리 등과 관련하여, 참사 직후, 유가족 간 소통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 지원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증되어야 함. 유가족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조치한 내역 전체를 공개하고 그 적정성에 대해 검증되어야 함.

3. 경찰청 등

-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리라고 예상하고서도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수준의 대책을 세움. 참사 발생 이후, 이태원 인근의 인파밀집을 예상하고 보고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강요했고 이는 증거인멸로 판단됨.
- 참사 당일, 18시 34분에 접수된 신고는 좁은 골목에서 인파가 밀집되어 있는 위험을 알렸고 압사 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전달했음. 이후 22시 15분까지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 11건이 이어짐. 한편, 20시 33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서울경찰청의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코드1으로 분류하고 용산경찰서에 지령함. 인파에 따른 위험을 알리는 21시의 신고에 대해 코드0으로 분류함. 한편, 21시 57분에는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이 용산경찰서장에게 ‘사람이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알려져 있음.
- 국정조사를 통해 (1)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 등 경찰은 이태원의 ‘할러원데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했는지, 동선관리, 기동대 배치 등 적절한 인력의 확보 등 인파의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왜 그와 같은 대책을 세웠는지 밝혀져야 함. 또한, (2) 인파의 분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었는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유관기관에게 협조, 지원을 요청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관련 조치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전 위험 분석”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삭제를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해당 보고서는 누가 열람했는가 등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요구됨.
- 위험의 인지, 재난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하여, (4) 10월 28일부터 29일 22시 15분 시점까지 이태원 지역에 대해 접수된 112신고는 어떻게 처리했고 해당 처리가 적절했는가, 해당 시점에서 어떤 신고내용에 대해 코드1, 코드0로 분류하여 조치했는가, 위험의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왜 기동대는 배치되지 않았는지 (5) 소위 최초신고 이후, 압사, 인파의 밀집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신고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고 해당 처리가 적절했는가. 이들 신고내용은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에게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했나 등이 확인되어야 함.